직무발명 보상기업, 정부지원 대폭 강화키로

특허청,“ 직무발명 활성화 종합대책 ”과기장관회의 보고

직무발명에대한보상기준이회사와종업원모두에게이익이되는방향으로새롭게손질된다. 또한앞으로직무발명에대하여합리적인보상을실시하는기업에대한정부의지원도대폭강화될전망이다.

특허청은이같은내용을중심으로한“ 직무발명활성화종합대책을 제9차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상정, 보고했다고밝혔다.

발표된대책은크게직무발명관련법제도를정비하고, 민간기업의직무발명보상시를 유도하기위한유인책을강화하는2가지내용이골자를이루고있다.

먼저, 사용자와종업원간이해관계대립으로 지난5년간사실상입법공백상태였던직무발명보상관련법제가전면정비된다.

가장큰쟁점이되었던직무발명보상기준은민간의자율을존중하여보상액과보상형태의결정을사용자와종업원간의자율적인합의에맡기되, 그과정에종업원의의견이충분히반영되도록제도적장치를강화했다.

이에따라앞으로는기업체종업원도법에서 정하는절차에따라자신의발명에대한보상결정과정에참여할수있는길이열리게돼, 보상을둘러싼회사와종업원간갈등도크게줄어들것으로보인다.

또한, 종업원이직무발명을완성하였을경우 사용자에게신고를하도록하고, 사용자는그발명을승계할것인지여부를결정하여종업원에게일정기간내에통지하도록했다.

이러한절차를통해직무발명에대한소유권귀속과사용자의권리승계시점등이명확해져, 안정된권리관계를바탕으로 회사와종업원모두혁신적인기술개발에매진할 있게됐다.

금번법제는관련이해관계단체간상생차원의대타협을통해마련된것으로, 향후사용자는보상에대한예측가능성이확보되어안정적이고지속적인R&D투자의확대가가능할것으로보이며, 종업원은보상과정에대한실질적참여로정당한보상을향유함으로써창의적인연구개발을통한기술혁신에기여할수있을것으로기대된다.

이러한내용을담은발명진흥법개정안이국무회의를거쳐정부안으로확정되면오는9월정기국회에상정될예정이다.

법제정비와궤를같이하여, 종업원의직무발명에대한회사의합당한보상을유도하기위한정부의유인책도다양해진다.

우선정부R&D사업참여기업에대해R&D수행에따른기술개발결과에대하여참여연구원들에게충분한보상이가능하도록직무발명보상을의무화하는방안이추진된다.

현재산업자원부에서동제도를적극시행중에있으며, 이를여타국가R&D과제수행부처에도적극확대하여정부R&D사업전체로확대함으로써, 민간에대한직무발명보상을강화하는동시에국가R&D성과도극대화한다는복안이다.

특허청, 재난복구센터 개통

특허넷 DB, 출원시스템에 대한 완벽한 2중화 구성

특허청은 천재지변, 방화 등으로 특허데이터 유실로 인한 혼란 방지를 위해 재난복구센터를 서울사무소에 구축 완료하고 정상운영에 들어갔다.

특허청이 구축한 재난복구센터는 기존의 대전에 구축되어 있는 특허전산센터가 태풍, 홍수, 테러, 방화 등의 재난 및 시설/설비의 고장, 심각한 사이버범죄 등으로 인해 컴퓨터나 저장장치가 훼손되어 특허데이터가 유실되는 등의 비상사태가 발생할 경우, 3시간이내 특허출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기능을 갖춘 전산센터이다.

재난복구센터는 대전특허전산센터와 온라인으로 연결되어 출원인/대리인 등록에서부터 출원 후 수수료 고지 등에 이르기까지 출원접수업무와 관련된 모든 정보를 실시간으로 back-up하여 유사시 복제한 데이터를 이용한다.

또한, 대전특허전산센터의 운영상황을 실시간 모니터링하여 재난발생시 이를 즉시 감지하고 자동으로 운영할 수 있으며, 재난복구시양 센터간 신속한 데이터 이관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특허청은 기존의 특허전산센터 내의 주요 장비의 이중화 구성 뿐만 아니라 유사시를 대비해 재난복구센터를 별도로 구축함에 따라 데이터 유실 방지는 물론 비상시에도 최단시간 내 온라인 출원 및 접수시스템을 정상으로 가동할 수 있어, 오는 11월부터 24시간 온라인 출원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완벽한 체계를 갖추게 되었다.

또한, 정부의 각종 정책자금 지원시 직무발명보상을 실시하는 기업에 대하여 가점부여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도 아울러 추진될 전망이다.

김 종갑 특허청장은 " 직무발명 활성화의 요체는 바로 합당한 보상제도의 정착 에 있다며," 법제정비를 착실히 추진하는 한편, 정부의 가용가능한 정책수단을 효과적으로 활용, 직무발명의 활성화에 밑알이 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적극 협조해 나갈 계획 "임을 밝혔다.

변리사시험 제도 획기적 개선

선택과목 축소 조정 및 1차합격인원 축소 등

변리사시험제도가대폭개선될전망이다. 특허청은지난8월5일 변리사2차시험선택과목의축소, 1차시험합격인원의축소, 1차시험영어기준점수의상향조정등 시험제도개선을 내용으로하는변리사법시행령개정안을입법예고했다.

변경되는주요내용을보면우선, 그동안문제점으로지적되어온2차 시험선택과목간점수편차의여지를줄이고선택과목과다로인해매 시험마다250여 명의시험위원을선정해야하는등의 시험관리에있어비효율적요인을개선하기위해 "최근3년간 연 평균 응시인원이5명 미만인 과목"을 폐지하기로했다. 또한그동안1차합격자를1,000여 명 정도(2차 시험합격인원의5배)로운영하여2차 시험경쟁률이9:1을 상회하고그결과매년1,600여명의고시낙방생이발생함으로써유능한이공계의인력이사장되는결과를초래한다고지적되어왔다. 이에현행1차합격인원을2차시험합격인원의3배수로낮추어2차 경쟁률을적정화(5~6:1)함으로써고시낭인양산의폐해방지와더불어시험관리의공정성도높이도록하였다.

아울러국제출원업무의증가를비롯한변리업무의세계화추세를감안할때 영어가차지하는 비중이점점증가하는추세에대응하여민간영어능력 검정시험의기준점수를상향 조정하였다. 또한최근일부외국의비정기적영어시험에서쉽게높은성적을획득하는사례등영어시험의형평성문제를해결하기위해국내에서실시되는영어능력검정시험에한하여유효성적으로인정토록개선하였다.

한편, 경력공무원에대한전문자격자동부여제를폐지하는대신일부과목을면제하고시험에의해 자격을취득하도록한 정부의규제개혁조치('99년)에따라특허청에서5급이상으로5년이상 근무한자가2006년부터시험에응시하게된다.

이로인해 일반수험생과특허청경력공무원(과목면제자)간에과도한경쟁관계가형성되는 것을막기위해특허청경력자도일반수험생과 동일한시험을보고동일한합격선(cut-line)을 적용하되일반수험생의합격인원과별도로선발함으로써일반수험생에게는최소합격인원(200명)을보장하여특허청경력자의시험응시로인해일반 수험생이불이익을받지않도록하였다. 이는 지난4월에 실시했던설문조사에서수험생중 61%가지지한사항이기도하다.

특허청에서는이번제도개선을추진함에있어 유예기간을부여하는등가능한한수험생의충격이 적도록배려하였다. 변경되는제도는각 사안별로일정의적응기간을두고시행할예정이다. 즉, 일반수험자에게불이익이없는면제자분리 선발과이미예고한바 있는국내시험에限한영어성적인정은 '06년부터시행하고선택과목축소와영어기준점수상향조정은2년간의적응기간을거쳐 '08년부터시행을예정하고있다. 또한 1차 시험합격률은 '06년에최소합격인원의4배수로, '07년 이후부터는3배수로점차축소시켜 나가는방안을고려하고있다.